공결 신청 방법 및 규정

URL: https://computer.kongju.ac.kr/bbs/ZD1140/1410/294753/artclView.do 작성일자:2024.03.25

- 1. 공결 신청 방법
- 가. 포털사이트에서 공결 신청
- 1) 증빙자료 첨부
- 2) 증빙자료는 한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권고
- 가) 여러장인 경우에도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
- 나) 사진 촬영하여 제출 시에는 스캔 어플 사용하여 pdf로 변환 후 업로드(서류가 접혀져있는 상태로 촬영한 사진들은 처리 불가)
- 3) 자세한 절차는 첨부의 매뉴얼 확인
- 2. 공결 및 병결에 대한 학사운영 규정 발췌

제**62**조(공결 및 병결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,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학과(부)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을 경우 공결로 인정하며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7. 8. 25., 2020. 11. 2.>

- 1. 관계법령에 의한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,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결석 : 해당 기간
- 2. 경조사로 인한 결석 <개정 2020. 11. 2., 2024. 1. 30.>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차녀	1
출산	본인	20
	배우자	5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3
입양	본인(입양한 경우)	20

- ※ 경조사기간 중토요일,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공결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3. 총장이 추천한 각종대회 참가로 인한 결석 : 참가 기간
- 4.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(교육실습, 현장실습, 고적답사 등): 해당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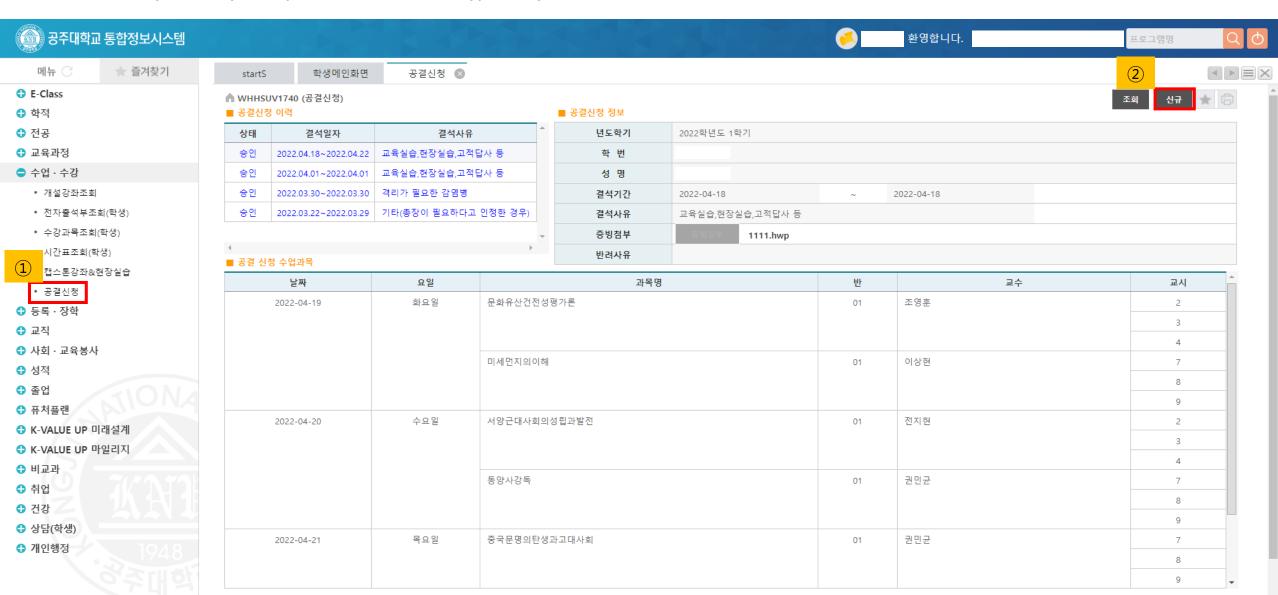
- 5.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등으로 인한 결석(수업시수 대비 최대 2분의 1까지만 허용): 대회출전 기간, 훈련 기간, 대회참가를 위한 이동일
- 6.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걸린 경우. 해당 격리기간 (신설 2019. 10. 8.)
- 7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개정 2019. 10. 8.)
-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어 결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「병결 승인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」를 학과(부)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을 때에는 과목별 학기당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 이하까지는 병결로 처리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.<개정 2024. 1. 30.>
- 3. 공결 및 병결 신청 관련 유의사항
- '[공결]기타(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'에 따른 공결 증빙서류(예시): 참여 공문(총장결재 필수), 참여자 명단(필수)
- '[병결]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'는 과목별 학기당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이하까지만 병결로 처리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.(4분의 1초과 되는 경우 결석): 입원하는 경우만 병결 사유에 해당
- 공결 증빙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(zip 등)하여 모든 증빙을 등록하여야 함(증빙이 부실한 경우 반려)

Attachments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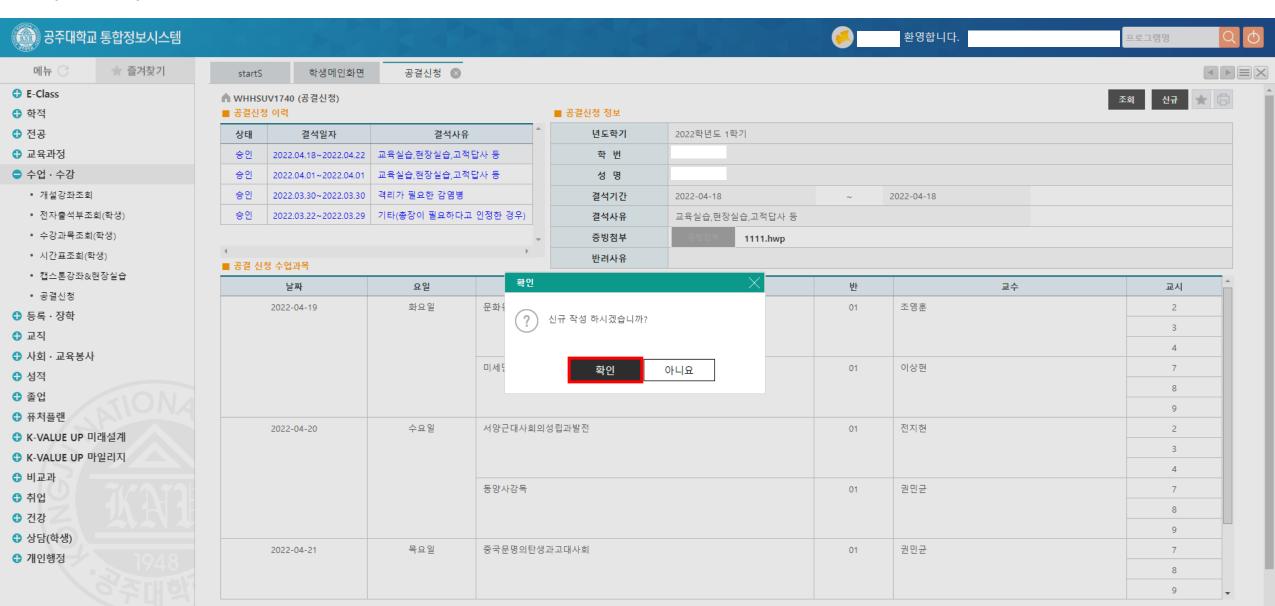
• https://computer.kongju.ac.kr/bbs/ZD1140/1410/506418/synapView.do

공결 신청 방법 (학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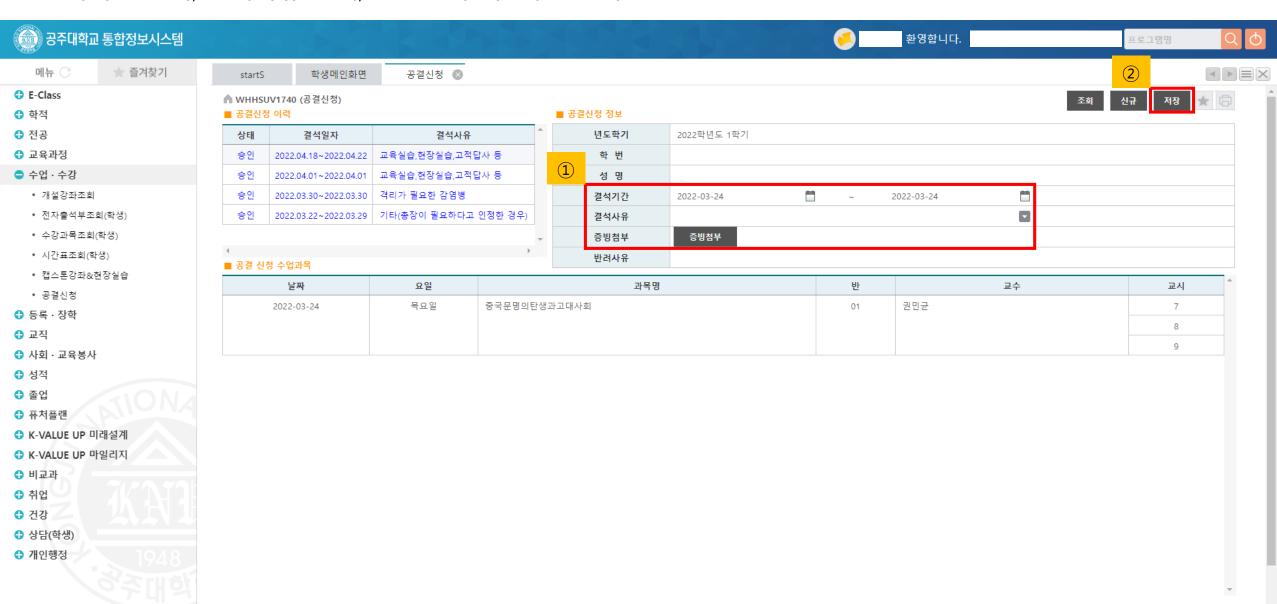
1. 통합정보시스템-수업·수강-공결신청-신규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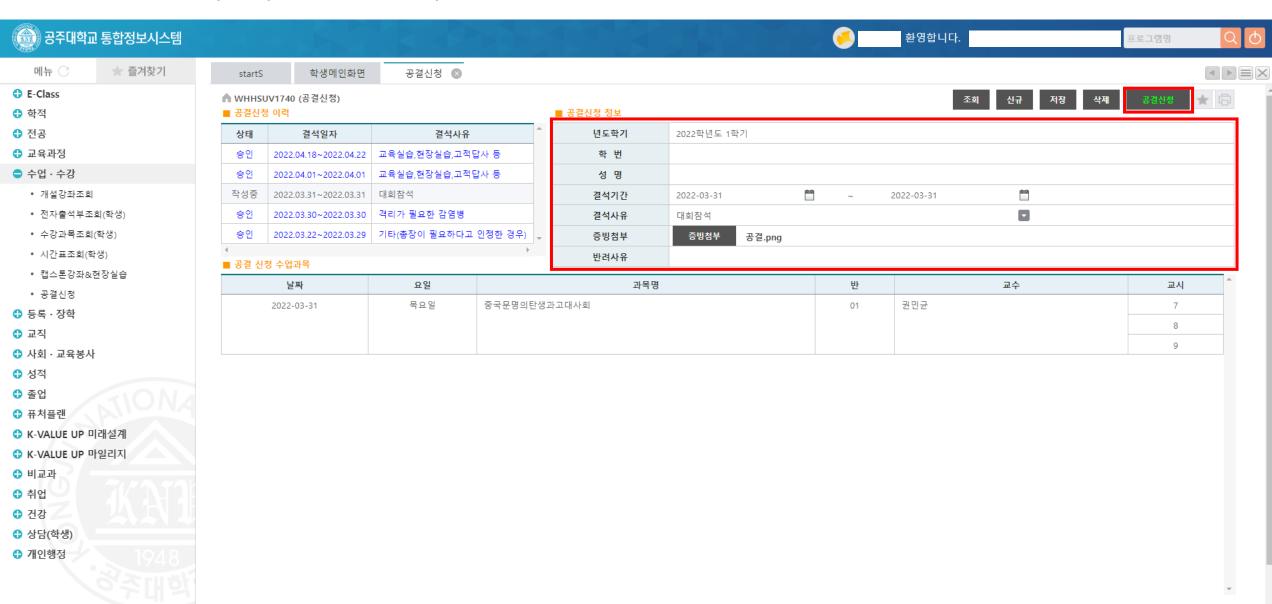
2. 확인 클릭



3. 결석기간 입력, 결석사유 선택, 증빙 첨부 후 저장 클릭



4. 공결신청 정보 확인 후 공결신청 클릭



5. 공결신청 완료 화면

